

호주 사례 1

**핵심적 의미 손상하지 않았다면
신문사의 편집행위는 정당**

언론평의회는 Arthur Hadaway가 「Bribie Weekly」 2008년 3월 7일자에 보도된 기고문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기각 처리했다.

그 기고문은 Hadaway의 집근방 통행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는 신문에 실린 내용이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평의회는 그 기고문이 편집을 통해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의미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평의회는 Hadaway와 신문사 편집인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Hadaway와 신문사는 기고문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모든 신문사는 기사의 분량, 문법, 명예훼손적 요소 등의 이유로

인해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 사건에서 변경된 Hadaway의 기고

문의 내용은 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취 사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평의회는 지난 2008년 2월 29일자 기사를 통해 Hadaway가 자신의 동일한 내용의 의견을 충분히 알릴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

호주 사례 2

**소문과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

언론평의회는 서호주 자원부 장관인 Francis Logan이 「The Australian」가 Woodside Petroleum사가 운영하던 West Shelf 공장의 폐쇄와 관련한 지난 1월 2일 보도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제기 건을 받아들였다.

공장 폐쇄와 관련한 기사는 2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기사는 “혼란 상태에서 매입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9

만 달러의 가스료를 지불하게 됐다”는 제목 등으로 보도됐다.

Logan은 전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것은 주의 가장 큰 에너지 공급업체인 Verve Energy사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Builisers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Logan의 개입 때문에 Verve Ener-

gy사가 높은 인수 비용을 치르게 했으며, 이러한 일들은 그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자원부 장관의 불만 건에 대해 언론평의회는 “9만 달러의 가스비”라는 기사와 관련 가스비는 1만 달러에 불과하고 8만 달러는 디젤 가격이라는 사실과 그것은 당시의 시장 가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Logan을 겨냥한 비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사 중 소문에 근거한 것과 사실에 근거한 것을 구별해 내는 것은 신문사의 책임이라고 평의회는 판단했다. 신문사는 Burrup Fertilisers의 안정된 가스 공급을 위한 협상에 대해 누설된, 피고용인의 이메일에 담긴 발언에 근거해 보도를 합리화하려고 애써왔다.

평의회는 신문사가 Logan 장관이 Burrup Fertilisers사의 가스 공급을 위한 가격 협상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취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주장에 대하여 Logan 장관의 의견을 밝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건과 관련, 신문사는 Logan 장관의 언론 담당 비서와 연락했지만 Logan 장관이 Burrup Fertilisers가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을 하고 가격을 보장받도록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하는데 그쳤다. Logan 장관은 그때 “가스 가격에 관해 개입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원 기사가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해, 평의회는 신문사가 Logan 장관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Logan 장관은 신문사의 보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Logan 장관의 브리핑에 의하면, 신문사는 심지어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한 가스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그가 이에 개입했다고 곡해할 수도 있겠다”는 그의 발언을 유죄를 인정한 것 마냥 해석함으로써 Logan 장관을 불공정하게 대했다. “보도를 3일간 부인한 이후 Logan 장관의 자인한 것은...”으로 시작되는 2월 23일의 보도는 합리적인 독자에게는 Logan 장관이

Burrup Fertilisers사와의 가스 가격 협상에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신문사가 보도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불만 제기에 대응해, 신문사는 결국 Logan 장관이 보낸 서한을 보도했으나, 신문사가 그 잘못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장관이 비판한 부분을 삭제했다. 그 서한은 2008년 3월 22일에 보도됐다. 신문사는 Logan 장관의 언론 담당 비서가 서한을 「The Australian」 시드니 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퍼스나 시드니 지사 그 어느 쪽에도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한의 공개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신문사가 Logan 장관의 개입 보도에 대해 신문사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불만 제기를 인정했다. □

영국 사례 1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의무 있다

Carloyn Pople는 언론불만처리 위원회(PCC)에 2008년 2월 5일 「Scarborough Evening News」가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게시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PCC

의 실천강령 제3항(프라이버시)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또 그 사진이 “마약과 현금 압수”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위원

회는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촬영하였으며 경찰이 마약을 찾기 위해 신청인의 집을 수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영상은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사진은 신문을 통해 기사화 되었다.

불만 신청인은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동의없이 보여준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 보도는 그녀의 집 주소까지 명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의 집에서 약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으나 그녀는 그것의 출처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고, 아직 그 건에 대한 기소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문사는 (보도와 관련해) 마약 퇴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과 동행하여 수색에 참여하였으며, 신청인의 집에서 불법마약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그 보도는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소가 명확하게 공개된 것에 대하여서는 그 주위 사람의 집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신청인에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승인 없이 신청인의 집 내부를 촬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특히 그 주소를 공개한 것은 더욱 더 그러한 것이라며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과 함께 수색현장을 촬영했다는 것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보다 공중의 관심사가 우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은 촬영장면이 경찰의 임무수행 중 중요

한 부분을 보여줄 것과 특별한 범죄의 폭로에 관한 것이어야 함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마약 퇴치와 관련된 경찰의 캠페인을 보여주는 것은 공중의 관심사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사생활에 대한 충분한 보호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동영상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뛰어넘어 불만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영국 사례 2

사고에 대한 보도라도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은 신중하게 다루야

Paul Kirkland는 Hartley 가족을 대신해 「Wiltshire Gazette & Herald」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8년 2월 13일자 “사고 후 폐쇄된 길”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2월 14일자 “운전기사의 뒷”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장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의 가족을 충격에 빠뜨려 실천강령 제3조(프라이버시), 제5조(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입)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제1조(정확성)와 제2조(반론기회)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했다. 그러나 언론불만처리

위원회(PCC)는 신문사의 보도에 대한 구제 행위가 충분했다고 판단, 더 이상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불만 제기인의 장모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신문이 사고에 대한 온라인 기사를 제공하면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포함시켰고, 불만 제기자는 그 사진이 너무나 적나라하다고 생각했다.

불만 제기인은 그 기사가 가족 중 누구도 그 사고와 부상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

도되었으며, 신문이 경찰관의 말을 인용, “생명이 위독하다”고 (부정확하게) 보도해 그것이 심각한 사고였다고 이해하도록 한 것은 슬픔과 충격에 대한 침입이자 부주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그 다음 날 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였으나 불만 제기인은 여전히 그 기사가 실천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신문사는 그 사고가 한 낮에 일반 도로에서 일어나 긴 정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고, 불만 제기자가 Wiltshire 경찰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바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사는 불만 제기인의 의견을 다음 날 신문에 실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충분한 구제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실천강령이 신문사에게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대한 사항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신문은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불만 제기인의 얼굴이 인식가능하지 않고 이름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차량의 종류와 번호판도 사진에서 알아 볼 수 없지만, 홈페이지에 (불만 제기인 얼굴의 일부가 식별 가능한 상태로) 게재되었으며 다음날 신문에 보도된 그 사진은 분명히 해당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고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가족이 사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고자의 상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 사고자의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또 신문사는 사고가 공공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관한 것과 의료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진을 보도할 때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충분한 필요가 있으며, 다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자연재해 등 공중의 관심사가 지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건의 경과에 대해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번 일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로서 사고자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자의 얼굴과 치료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하는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충분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문사의 이후 조치에 대해 주목했다. 신문사는 사과와 함께 즉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고, 가족의 비판과 신문사의 사과를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홈페이지에 사진이 게재되었던 비교적 짧은 시간을 고려하면, 실천강령 제3조, 제5조와 관련한 불만에 대한 조치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신문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위원회는 불만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리고 신문상의 사진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사진에서는 불만 제기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조치되었고, 치료받는 장면도 보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고장면을 담은 사진의 사용에 대한 가족의 염려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만 신문의 사진 사용은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윤리강령 제1조, 제3조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서는 신문사가

현장의 경찰관이 사고자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을 위원회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그 건의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경찰의 명확한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문이 발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사고자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문사가 그 사건에 대해 빠른 정정을 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사고자의 상태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였으며 그 건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신문에 실은 것 또한 적절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들은 윤리강령 제1조, 제2조와 관련한 불만처리에 충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사로 인해 피해 가족이 느낀 감정과 불만에 대해 신문 편집인이 취한 조처를 고려할 때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

미디어 고문인 Iain Butler가 공개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Butler는 기사가 나가자 바로 교육부 장관인 Kare Sewell의 서한을 가지고 신문사를 찾았으며, 이 기사는 부정확한 것이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직원이 220명 증가했다는 내용은 잘못이며 실제로는 2,000명이상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보는 신문사에 전해졌고 신문사도 실수를 인정했지만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정확한 보도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안에 관한 논의가 신문사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11월 19일에 불만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연봉 총액의 증가는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담당 직원들이 2200명 이상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10만 달러 이상을 연봉으로 받는 직원도 4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전체 인원에 대비한다면 평균 연봉은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신문사에도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또 Donna Hikey는 인금인상 요구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그 보도는 공정함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 제목 역시 부정확한

뉴질랜드 사례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할 의무 있다

뉴질랜드 언론평의회는 교육부가 「The Dominion Post」의 2007년 9월 18일자 기사를 대상으로 한 불만제기를 받아들였다.

「The Dominion Post」는 “9천4백만 달러의 월급이 분노를 불렀다”라는 기사를 통해 직원들의 월급은 2002년 이후 16퍼센트 올랐는데 반해 교육부 월급 총액은 154퍼센트 상승했으며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27명에서 142명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으며, Wellington

College의 총장인 Roger Moses, 교장 협의회 의장 Arthur Graves 등의 비판적인 논평도 함께 실었다.

기사는 또 교육부의 인적자원 담당 Donna Hikey의 말을 인용, 이러한 상승은 220명의 특수교육 담당 직원의 증가를 포함하는 조직의 변화와 함께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와 교육부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The Dominion Post」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신문사는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The Dominion Post」의 편집인은 12월 21일 불만제기 건에 대한 회신을 통해 그 기사는 지난 7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당한 요구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교육자금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배경으로 작성되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그 기사에 대한 보도 연기 요청을 해오자 휴가 중이던 담당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줬으나 최종 기사 마감일까지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최종 기사는 다른 기자에 의해

쓰여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원래 담당이던 기자는 교육부 미디어 고문인 Butler와 기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했으며 Butler는 그러한 수치들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편집인은 일부 잘못된 수치들이 사용된 것과 Ms Hikey의 말에 대한 인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음은 인정했다. 그는 Butler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의사가 있으며 그러한 기회는 아직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논평들은 교육부가 제공한 수치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목 역시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평의회는 이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신문사가 수치와 인용 내용 중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러한 내용들은 이 기사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언론평의회는 정정보도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교육부와 신문사의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차이가 신문이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경감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목과 관련, 제목 자체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기사 자체가 잘못된 가정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부정확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